

## 내장재료 연소성능 시험방법 개정

소방법 시행령 제2조 9호~11호의 불연재료, 준불연재료, 난연재료는 건축법 및 동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, 1988년 2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8호(준불연재료) 및 9호(난연재료)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수되어 재료의 난연성능 시험방법이 건설부 고시 제310호로 제정, 공포(89. 2. 24 부터 시행)됨으로서 시험방법이 개정되었다. 새로운 시험방법에 따르면 준불연재료와 난연재료에 대하여 연소가스 유해성시험이 추가 되었는데 이 시험기는 국내에서 당 시험소와 국립건설시험소에만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시험의뢰가 기대되고 있다.

연소가스 유해성시험을 실험용 흰쥐를 피검상자내의 회전바구니에 넣고 가열을 시작해서 흰쥐가 행동을 정지할 때 까지의 시간(행동정지시간)을 측정함으로서 재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가스의 유해성을 판정하는 것이다.

시험방법 대비표

내 장 재 료	기 준	재 정
불연재료 (난연 1급)	KSF 2271의 표면, 기재시험	좌 동
준불연재료 (난연 2급)	" 표면, 부가시험	KSF 2271의 표면, 부가시험 + 연소가스유해성시험
난연재료 (난연 3급)	" 표면시험	" 표면시험 + "
근 거	건설부고시 제 94 호 ('84.4.8.)	건설고시 건설부고시 제 94 호 및 건설부고시 제 310 호 ('88.6.28)